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자료

- 일 시 : 2022. 3. 14.(월) 14:00
- 장 소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세미나실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영덕 충효당 종택 주변 제조시설 신축 | |
| 2 | 남양주 궁집 주변 주상복합 신축 | |
| 3 | 남양주 궁집 정비공사(재심의) | |
| 4 | 남양주 궁집 주차장 신축공사(재심의) | |
| 5 | 영천 만취당 고택 주변 별목 | |
| 6 | 고성 왕곡마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

【보고사항】

- | | | |
|---|-----------------|--|
| 7 |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 |
|---|-----------------|--|

심 의 사 항

1. 영덕 충효당 종택 주변 제조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영덕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영덕 충효당 종택」 주변 제조시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영덕 충효당 종택」 주변 제조시설 신축이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약 428m)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영덕 충효당 종택」
 - 소재지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인량6길 48
- (3) 신청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
- (4)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제조시설-체험장) 신축
 - 대지면적 : 238㎡
 - 건축면적/연면적 : 21㎡/21㎡
 - 구조 / 지붕 : 경량철골구조 / 경사지붕(샌드위치판넬)
 - 층수 / 높이 : 지상1층 / 4.88m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부지는 영덕 충효당 종택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충효당 종택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잘 조망되지 않으나 신청부지 주변에도 문화재가 다수 위치한 점, 경상북도 의견조회 결과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함.

마.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 ○○○, ○○○/2022. 1. 11.)

- 국가지정문화재 영덕 충효당 종택과는 거리가 이격되어 있어 국가지정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나 도지정문화재와 인접해 있어 경상북도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는 것이 좋겠음.

바. 경상북도 의견(2022. 2. 3.)

- 도지정문화재 길암종택의 전면 축선 상에 위치하고, 도지정문화재 정담정려비의 좌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제출된 건축계획은 문화재 조망권과 역사문화환경 경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남양주 궁집 주변 주상복합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남양주 궁집」 주변 주상복합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남양주 궁집」 주변 주상복합 신축이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4구역(이격거리 약 282m)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 4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개별 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남양주 궁집」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9 일원
- (3)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
- (4) 신청내용 : 주상복합 신축
 - 대지면적 : 4,059.37㎡
 - 건축면적/연면적 : 1,543.96㎡ / 25,214.38㎡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층수/높이 : 지하2층 지상 27 / 최고높이 88.2m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나 문화재 내 구릉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위치이고, 신청부지 주변에 공동주택 등이 조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함.

마.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 문화재전문위원 ○○○ /2022. 2. 18.)

-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 시 문화재 주변의 경관 검토를 위한 자료 보완
 - 궁집 문화재 구역 내의 3개 지점에서 사업계획부지를 조망했을 때 경관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자료 보완
 - 계획 중인 건축물에서 문화재를 바라봤을 때의 경관을 검토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문화재를 바라본 경관 자료 보완
- 신청부지와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경우 20층/60m의 규모이고, 신청부지 배후 공동주택의 높이는 24층/70m 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남양주 궁집 정비공사(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기 남양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남양주 궁집」 내 정비공사를 위해 현상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남양주 궁집」 문화재구역 정비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남양주 궁집 종합정비계획 : 2021년 제1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1. 2. 9.) 심의
 - 조건부 가결 : 간정, 주차장, 안내소 등의 규모·형태는 별도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것
 - ※ 제1차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2. 2. 8.)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남양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남양주 궁집」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9 일원
- (3)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궁집 일원
- (4) 신청내용 : 궁집 주변 정비사업

구분	당초	금회
철거	부속사 7, 8	부속사 7, 8 보수 후 활용
조경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정비 : 교목제거 56주, 관목제거 32주, 이식 1주, 울타리 조성, 관목 보식 등 ● 바닥 포장 정비 : 산책로 마사토 포장, 연지 주변 인조화강석블럭 포장 ● 연못조성 : 10m~23m × 5m~23m, 담수면 320㎡ ● 계류정비 : 석축 보수 94m 석축 쌓기 64m ● 부속사 5,6 정비 : 스탠드 정비 및 방지 정비(연지 석축 및 바닥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정비 : 교목제거 56주, 관목제거 32주, 이식 1주, 울타리 조성, 관목 보식 등 ● 바닥 포장 정비 : 산책로 마사토 포장, 연지 주변 인조화강석블럭 포장 ● 연못조성 : 6m~18m × 5m~19m, 담수면 <u>250㎡</u> ● 계류정비 : 석축 보수 94m 석축 쌓기 64m ● 부속사 5,6 정비 : 스탠드 정비 및 방지 정비(연지 석축 및 바닥 보수)

구분	당초	금회
토목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오수, 상수도 정비 -관로 신설, 맨홀 및 집수정 신설 2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오수, 상수도 정비 -관로 신설, 맨홀 및 집수정 신설 20개소
부대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소방 -맨홀 철거 5개소, 신설 15개소, 보안등 신설 23개소 -CCTV 폴 철거 11개소, 신설 14개소, 카메라 설치, 스피커 설치 10개소 -옥외호스릴소화전 철거 3개소, 신설 5개소, 감지기 및 수신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소방 -맨홀 철거 5개소, 신설 15개소, 보안등 신설 23개소 -CCTV 폴 철거 11개소, 신설 14개소, 카메라 설치, 스피커 설치 10개소 -옥외호스릴소화전 철거 3개소, 신설 5개소, 감지기 및 수신반 설치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남양주 궁집 종합정비계획의 1단계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으로 궁집 문화재 구역의 소유권 확보에 따라 노후된 시설의 보수 및 정비,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임
- 신설되는 연못의 규모가 다소 축소된 점, 이축된 부속사의 활용 등 계획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함.

마.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 ○○○, ○○○, 문화재전문위원 ○○○/2022. 2. 18.)

- 보호구역 내 위치한 초가집 2동은 모두 존치하고 수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방지는 기능 회복을 위해 현 상태에서 최소한의 정비만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주변 경관을 고려한 조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음.
- 연지 조성은 계류 정비와 연계한 순환 시스템은 유지하되 규모를 축소하고, 연지 주변의 박석 포장 규모 또한 축소하는 것이 좋겠음.

4. 남양주 궁집 주차장 신축공사(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기 남양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남양주 궁집」 내 주차장 신축을 위해 현상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남양주 궁집」 주차장 신축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남양주 궁집 종합정비계획 : 2021년 제1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1. 2. 9.) 심의
 - 조건부 가결 : 간정, 주차장, 안내소 등의 규모·형태는 별도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것
 - ※ 제1차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2. 2. 8.)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남양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남양주 궁집」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9 일원
- (3)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70-3외 8필지
- (4) 신청내용 : 궁집 주차장 신축
 - 대지면적 : 4,127.08㎡
 - 건축면적/연면적 : 380.73㎡/4,832.72㎡(지상층 연면적 183.70㎡)
 - 주차대수 : 100대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층수/높이 : 지하 2층, 지상1층/4.8m(엘리베이터)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남양주 궁집 보호구역 내 지하주차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상에는 엘리베이터 관련 시설만 소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 주차 계획 대수가 100대로 규모의 변동이 없는 점, 지상에 시설물이 거의 설치되지 않고, 주차장 진입 램프의 위치가 변경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함.

마.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 ○○○, ○○○, 문화재전문위원 ○○○/2022. 2. 18.)

- 차량 진출입 램프 조성으로 인해 궁집을 둘러싼 지역(우백호 자락) 훼손이 우려되므로 주차장 진·출입로를 이면도로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음.
- 문화재와 사업위치가 가까워 암반층 굴착 시 진동으로 인한 문화재 영향이 우려되므로 굴착 깊이가 암반층을 넘지 않도록 5m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

5. 영천 만취당 고택 주변 벌목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영천 만취당 고택」 주변 벌목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영천 만취당 고택」 주변 벌목이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3구역(이격거리 약 300m)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 3구역 :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21조의3 제4호에 따라 고사·피해목 제거 외 벌목은 개별 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영천 만취당 고택」
 - 소재지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종동길 25
- (3) 신청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
- (4) 신청내용 :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벌목사업
 - 사업면적 : 34,608㎡(벌목면적 25,548㎡, 잔존면적 9,060㎡)
 - 벌목 수량 : 리기다소나무 170본, 굴참나무 43본
 - 잔존 수량 : 소나무 404본, 리기다소나무 61본, 굴참나무 15본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 사업은 영천 만취당 고택의 배산에 해당되는 부지에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벌목사업을 하는 것임.
- 벌목의 면적이 다소 넓으나 사업부지 대부분이 능선 너머인 점, 대다수의 소나무를 존치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함.

6. 고성 왕곡마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강원 고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 허용기준 조정을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신청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성군수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
 -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일원
- (3) 신청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주요내용
 - 1구역(개별심의) → 3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 3구역(평지붕 개별심의, 경사지붕 12m) → 5구역(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고성 왕곡마을의 남측에 위치한 농경지 및 능선에 대한 허용기준 완화를 요구한 지역주민의 민원('21. 2월)으로 인해 조정 신청한 사항임.
- 남측의 농경지(농림지역) 및 산자락(계획관리지역)의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마을 내·외부에서의 가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함.

마.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문화재전문위원 ○○○/2022. 2. 28.)

- 마을 북측 진입부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남쪽 마을 안산 기슭과 농경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보고 사항

7.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성주 한개마을」 내 석축 보수 등 현상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자체처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계		2건	허가 2건
성주 한개마을	경북 성주군 월항면 (○○○)	<input type="checkbox"/> 성주 한개마을 내 석축 보수 ○ 신청위치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한개2길 ○○○ ○ 허용기준 : 지정구역 내 ○ 신청내용 : 석축 보수 - 자연석 석축 보수 H= 0.8m ~1.2m, L=4.1m	○ 허가 - 이완된 석축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
청주 고은리 고택	충북 청주시 남일면 (○○○)	<input type="checkbox"/>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허가) ○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 ○ 허용기준 : 1구역 ○ 이격거리 : 약 233m ○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92.86㎡/98.48㎡ - 구조 : 일반목구조 - 층수/높이 : 지상2층 / 5.5m	○ 허가 - 허가기간이 경과하여 재허가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 북측의 구릉으로 인해 문화재에서 잘 조망되지 않아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